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충청북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라 함은 도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도지사가 향토문화·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2.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3. 기념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연지·요지·유물포함층등의 사적지와 경승지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등에 관한 민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그 밖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 ② 이 조례에서 충청북도문화재자료(이하 "문화재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문화재위원회

제3조 (설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 명령
5. 도지정문화재의 도외 반출허가
6.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보전을 위한 제한·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거·이전등의 명령
7.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
8.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 대상자 심의
10.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제4조에 규정한 사항을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제2분과위원회·제3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중 건조물과 동조동항제3호의 기념물중 사적지 및 동조동항제4호의 민속자료중 가옥(집단 민속자료구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중(건조물은 제외한다) 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에 관한 사항
 3. 제3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의 무형문화재·동조동항제3호의 기념물(사적지는 제외한다) 및 동조동항제4호의 민속자료(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원과 배치는 위원장이 정한다.
- ④ 각분과위원회는 그 호선에 의하여 분과위원장은 선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5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의 품위손상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간사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도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제1절 지정

제14조 (도지정문화재) ① 도지사는 제2조의 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한다.

② 도지정문화재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구분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보유자외에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 지정) 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 ① 도지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구역과 보호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보유자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 제18조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무형문화재 보유인정자(보유단체 포함)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당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의 인정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전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④ 도지사는 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해제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해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9조 (가지정)** 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이 긴급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보호물의 설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가지정 취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정된 문화재는 가지정후 6개월이내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20조 (문화재자료의 지정)** ① 문화재자료는 제2조의 문화재중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중에서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 ② 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는 1945년이전에 건립된 건조물과 오래 되지않은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확대 지정한다.

③ 문화재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④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문화재자료 지정에 이 를 준용한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1조 (문화재안내표지의 설치) ①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향토문화의 정확한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안내표지를 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안내표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안내판 : 당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내용을 관람자에게 설명하는 표지판

2. 경고판 :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구역이나 그 보호 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관람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지판

제22조 (관리방법의 지시)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유자에 대하여 그 문화재의 관리·보호에 관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23조 (소유자등의 관리의무와 관리자) 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당해 문화재를 선량한 주의로써 이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22조 및 제1항의 규정은 관리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4조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공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관리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⑥ 제17조,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관리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5조 (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등)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화재·도난·훼손·멸실등의 예방 기타 그 보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관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원인이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6조 (수리등) ① 도지정문화재의 수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을 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수리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그 수리의 중지 또는 재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기록의 작성·보존)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허가사항)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규칙이 정하는 보관장소 또는 연고관계가 있는 장소로부터 반출하는 행위
3. 도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행위
4. 도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제29조 (반출금지) ① 도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는 도의 관할구역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문화재의 전시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고 그 반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도외반출을 허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 (허가취소) 도지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유로 도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 (관리등의 위탁 또는 기술지도) 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의 수리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또는 수리의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그 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의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그 보유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전수교육) ① 도지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정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실시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각각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은 자와 받고 있는 자를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자에게 이수증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2항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한 상황을 교부후 15일이내에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전수교육보조자) ① 도지사는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중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전수장학생) ① 도지사는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장학생을 지급할 수 있는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정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자중에서 그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④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전수교육기간·추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 (행정명령)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선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자의 해임 또는 교체

3.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4. 기타 도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조치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7조 (양도제한) 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 도에서 매입을 원할 때에는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매입할 수 있다.

제38조 (신고사항) 도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하며,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동거하는 가족중 1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도지정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하거나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때
3.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때
4. 도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등에 변경이 있는 때
5.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
6. 도지정문화재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7. 제28조제1호·제2호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한 때
8.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9. 제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명령을 받고 그 문화재의 수리, 시설의 설치, 장애물 제거 또는 기타의 조치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10.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

제39조 (보조금) ① 도지사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도지사가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 ③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또는 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 사용토록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 (보조금의 반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제39조제1항 각호의 교부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보조금의 교부 목적 대상물의 수리, 기타 공사의 허가가 취소된 때
3. 보조금의 교부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5. 보조금에 의하여 수리 기타 공사를 시행한 도지정문화재를 유상으로 양도한 때

제41조 (손실보상)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도에 의한 관리로 손실을 받은 자
2. 도지사가 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제42조 (준용) 제22조, 제23조, 제28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29조, 제36조제1항제1호, 제37조, 제38조, 제41조의 규정은 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된 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공 개

제43조 (공개) 도지정문화재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 (부동산에 속하는 도지정문화재의 공개) ① 도지정문화재중 부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기념물(동물자체는 제외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의식이나 문화재의 보존·관리상 그 공개가 부적당한 때
 2.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
 3. 도지사가 당해 문화재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공개의 제한 또는 중지를 명한 때
-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승인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 (동산에 속하는 도지정문화재의 공개) ① 도지정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다음 각호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문화재를 출품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하니하다.

1. 도박물관 기타 장소에서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한 공개를 위한 출품, 이 경우 도지사는 3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한 공개조치

② 제1항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정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문화재를 보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공개하거나 타인이 주최하는 전람회등에 출품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출품을 받을 전람회 등의 주최기관은 미리 전람회의 개최 취지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당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46조 (도지정무형문화재의 공개)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이상 그 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7조 (공개비용) 제45조제1항각호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출품 또는 공개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도가 부담한다. 다만, 그 공개 또는 출품으로 인하여 수입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8조 (급여 및 보상금) 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화재를 출품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서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45조제1항의 명령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를 출품하거나 공개하는 중에 문화재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는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 (관람료의 징수) 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도지정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금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3절 조 사

제50조 (관리상황의 보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재의 현상·수리·관리·환경보전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직권에 의한 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기타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도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제52조 (조사요청) ① 도지정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요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지정문화재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준용) 제50조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54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 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그 새소유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행한 명령·지시·기타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55조 (표창)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발견·신고한 매장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경우에 매장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도난·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이외의 자로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공개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

제56조 (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도지사는 문화재보호·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5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